

울산지방법원 2021. 4. 9 선고 2021가단105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 등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1. 4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,531,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,
가.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1. 10. 위 ·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,
나. 원고에게 2021. 1. 10.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완료일까지 월 222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과 제2의 나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강경숙

별지